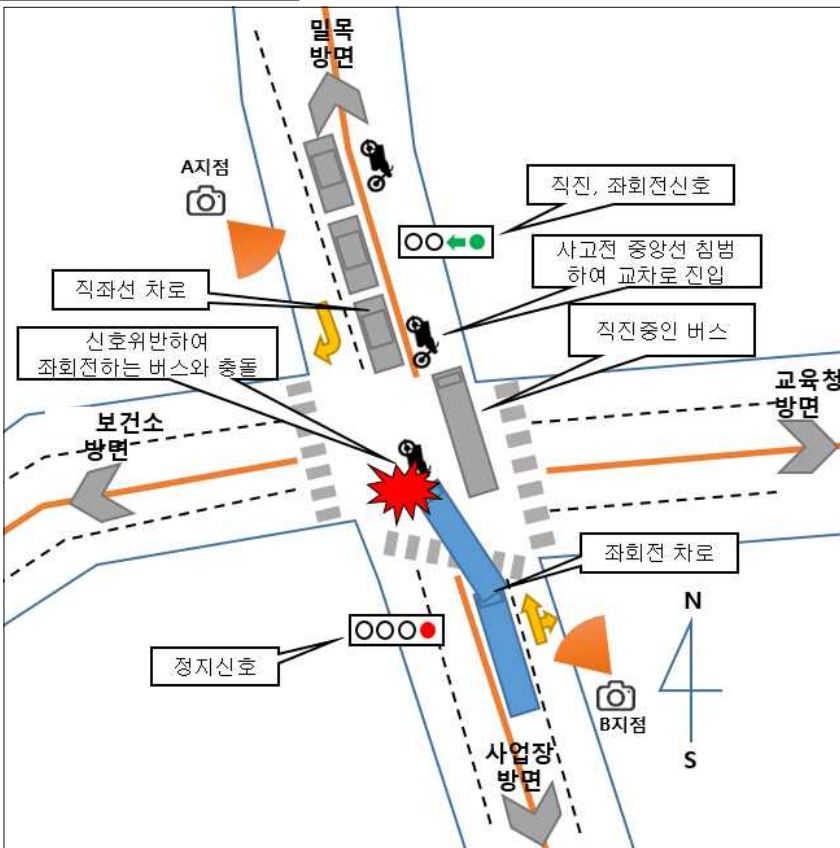


이륜차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

재해 개요

2018년 3월 경기 소재 치킨업체에서 이륜차로 치킨배달 후 사업장 복귀 중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과정에서 교차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 버스와 충돌하여 병원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.

재해관련사진



A지점 촬영사진



B지점 촬영사진

재해발생원인

- 이륜차에 승차하여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
 - (도로교통법 위반)재해자는 밀목 방향에서 배달을 마치고 복귀 중 교차로 1차선에 정차한 승용차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주행하다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진입 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따라 주행하는 가해버스와 충돌함.
-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 시 승차용 안전모 미착용
 - (보호구 미착용)재해자는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승차용 안전모를 미착용한채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음.

재해예방대책

- 배달 출발 및 복귀 시의 안전주행경로 설정 및 교통안전수칙 준수
 - 사업장에서 배달 출발 시와 배달 복귀 시 이륜차의 불법 주행이 행해지지 않는 안전주행경로를 설정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근로자 교육
- 배달업무시 승차용 안전모 착용
 -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·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차를 운행하는 작업시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 및 지도